

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 2026-1051호

행위제한 열람 공고

남구로2역세권(구로동 714-1번지 일대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하여 「토지 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4일

구로구청장

1. 제한 지역

명칭	위치	면적
남구로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	구로동 714-1번지 일대	11,486㎡

2. 제한 사유

- 가.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
- 나. 건축 및 토지 분할 등의 행위제한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

3. 제한 내용

가. 건축물의 건축

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
-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
-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
-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
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

나. 토지분할

다.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

※ 제한 적용 예외

가. 개발행위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 · 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

나.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

다.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

라.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

4. 제한 기간 : 행위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(※단, 정비구역 결정고시일까지)

5. 열람기간 및 장소

가. 열람기간 : 2026. 6. 4. ~ 6. 18.(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)

나. 열람장소 : 구로구청 도시개발과(구로구 가마산로 245, 4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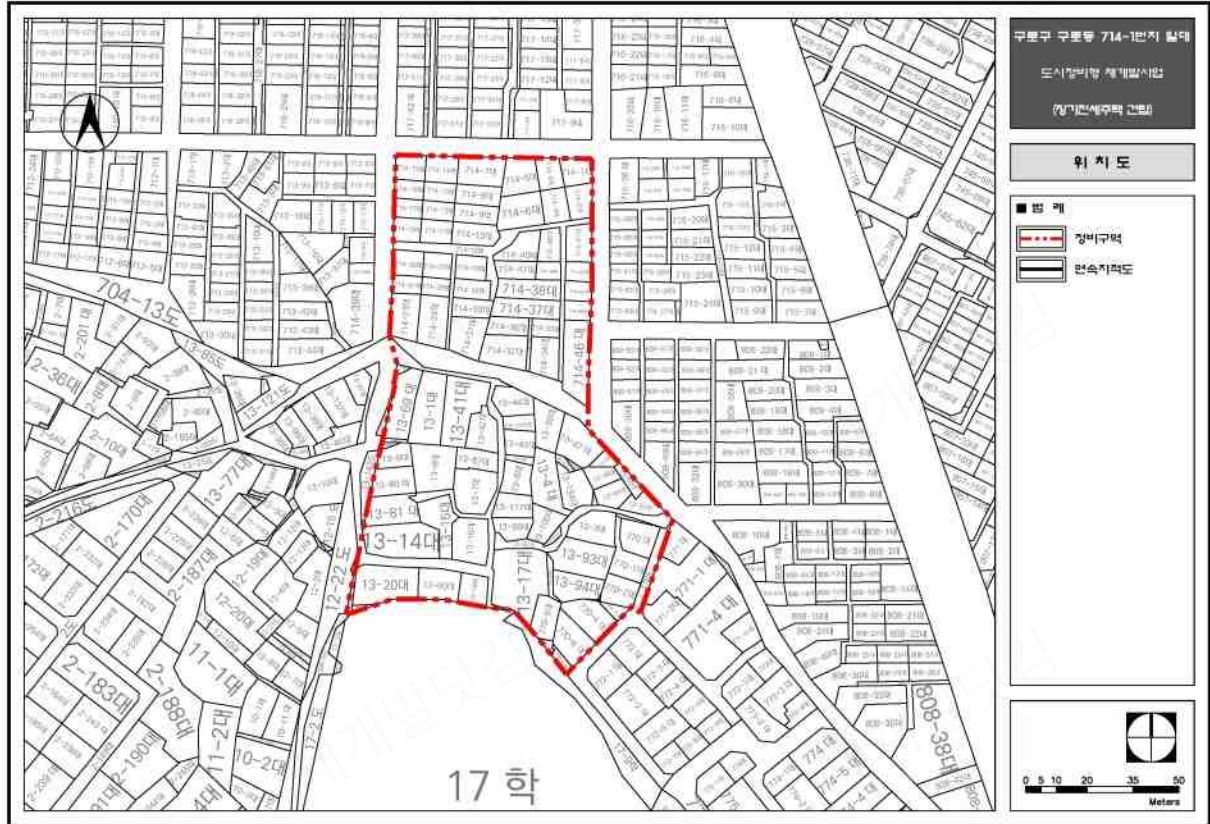
6. 지형 도면 : 붙임 참조

7. 관계 도서 : 게재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
8. 의견 제출 : 방문 또는 우편(※ 열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)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시개발과(☎02-860-269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위치도

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